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19. . (제 회)	

국 가 연 구 개 발 사 업 의 관 리 등 에
관 한 규 정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9. .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방식을 보다 신속·유연하게 함과 동시에 특허전략 계획 수립 등의 내용으로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 전략 및 혁신대책」이 확정(범부처 합동, 8.28)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정책지정 근거 마련, 수요기업 지원 강화,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연구개발과제는 특허전략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의 내용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정책지정 근거 마련 (Fast Track) (안 제2조, 제6조)

- 국가 주도로 R&D과제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 공모를 거치지 않고 부처에서 수행기관을 직접 지정하는 정책지정 근거 명확화

나. 수요기업 지원강화 (안 제7조제11항, 별표 1의3, 별표 1의4)

- 정부R&D에 대·중견 수요기업의 적극적 참여 유도를 위해 수요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기준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완화

* (현행) 대기업인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50%이상 부담→ (개선) 25%수준 부담

- 대·중견 수요기업의 정부R&D성과(제품·부품·서비스 등)구매를 촉진

하기 위해 구매실적이 있는 수요기업의 경우 선정평가 시 3% 이내
가점 부여

다. 특허전략(IP-R&D) 수립 지원 제도화 (안 제7항)

- 선행특허에 대응하거나 핵심특허를 선점·확보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
분야 대규모 응용·개발연구과제에 대해서는 특허전략 수립지원 제도화*

※ 다만 기초연구과제, 총 정부출연금 15억 미만 응용·개발연구과제, 기반구축 등
특허창출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과제, 과제 기획 시 특허동향조사로 갈음할
수 있는 과제는 제외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9.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
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9호의2 및 제15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수요기업”이란 참여기업 중 연구개발 과정에서 제품·장치·서비스의 성능평가·검증 등을 수행하고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개발하는 제품·장치·서비스의 구매를 희망하는 기업을 말한다.

15의2. “정책지정연구”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의 주도로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거나 대외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연구개발과제와 그 주관연구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국가의 주도가 불가피하거나 경쟁”을 “경쟁”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불구하고”를 “불구하고 정책지정연구 및”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정책지정연구의 경우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허전략 수립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재, 부품, 장비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연구개발과제(세부과제의 경우에는 세부과제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특허전략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1항에 따른 공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다

음 각 호의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기초연구단계의 연구개발과제
2. 총 정부출연금인 15억 미만의 응용·개발연구단계의 연구개발과제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4조제2항에 따른 특허 동향 조사를 특허전략 수립으로 갈음 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
4.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력양성, 기반구축 등 특허 창출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지 않는 연구개발과제

제7조제3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수요기업의 적정성(수요기업이 포함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최근 3년 이내에 수요기업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개발되고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성과로 등록된 제품·장치·서비스를 구매한 실적(구매계약서 등으로 증빙)이 있는 기업이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으로 포함된 연구개발과제

제7조제1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중복되는 과제로 판단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7조제11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정책지정연구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경쟁이나 상호보완이 필요한 경우
3. 유사한 주제의 연구개발과제라 하더라도 연구목표, 연구수행 방식

이나 연구단계 등이 다른 경우
별표 1의3 제1호사목을 제1호아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최근 3년 이내에 수요기업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개발된 제품·장치·서비스를 구매한 실적
(구매계약서 등으로 증빙)이 있는 기업이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
기업으로 포함된 연구개발과제가 신청된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3퍼센트 이내 가점 부여

별표 1의4 비고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수요기업의 경우에는 연구개발비 출연·부담기준을 중소기업 기준
으로 적용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개발과제의 신청 및 선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 제7조
제3항, 제7조제4항, 별표 1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고하는 국가
연구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고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9.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 9. (현행과 같음) 9의2. “수요기업”이란 참여기업 중 연구개발 과정에서 제품· 장치·서비스의 성능평가·검증 등을 수행하고 해당 연구개발 과제에서 개발하는 제품·장치 ·서비스의 구매를 희망하는 기업을 말한다.
10. ~ 15. (생략) <u><신설></u>	10. ~ 15. (현행과 같음) 15의2. “정책지정연구”란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 국가의 주도로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거나 대외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연구개발과제와 그 주관연구 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는 연구 개발과제를 말한다.
16. ~ 19. (생략) 제6조(공고 및 신청) ① 중앙행정 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을 추진하려면 사업별 세부계획 을 미리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16. ~ 19. (현행과 같음) 제6조(공고 및 신청) ① ----- ----- ----- ----- ---. -----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
하지 않거나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 2. (생략)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의
주도가 불가피하거나 경쟁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
여 연구개발과제와 그 수행기
관을 지정하여 추진하는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4. (생략)

<신설>

② ~ ④ (생략)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
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서는 제4항제1호부터 제6호까
지의 사항이 포함된 연구개발제
안서를 작성하여 연구개발과제
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
조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선정
되기 전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
여 제출하여야 한다.

⑥ (생략)

-----.

1. · 2. (현행과 같음)

3. ----- 경쟁-----

4. (현행과 같음)

5. 정책지정연구의 경우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 불구하고 정책지정
연구 및 -----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조(연구개발과제의 선정) ① ·
② (생 략)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허전략 수립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재, 부품, 장비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연구개발과제(세부과제의 경우에는 세부과제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특허전략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1항에 따른 공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기초연구단계의 연구개발과제
2. 총 정부출연금이 15억 미만의 응용·개발연구단계의 연구개발과제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4조 제2항에 따른 특허 동향 조사를 특허전략 수립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
4.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력양성, 기반구축 등 특허 창출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지 않는 연구개발과제

제7조(연구개발과제의 선정)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제11호의 경우에는 응용연구 또는 개발연구단계의 연구개발과제인 경우로 한정한다.

1. ~ 11. (생략)

<신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는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연구자가 신청한 연구개발과제를 우대하여야 하며,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연구자가 신청한 연구개발과제 또는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우대할 수 있다.

1. ~ 10. (생략)

<신설>

③ -----

--. -----

-----.

1. ~ 11. (현행과 같음)

12. 수요기업의 적정성(수요기업이 포함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만 해당한다)

④ -----

----- 제11호 -----

-----.

1. ~ 10. (현행과 같음)

11. 최근 3년 이내에 수요기업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개발되고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성과로 등록된 제품·장치·서비스를 구매한 실적(구매

⑪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3항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중복성을 검토할 때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 중복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의 중복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이나 상호보완이 필요한 경우 또는 유사한 주제의 연구개발과제라 하더라도 연구목표, 연구수행 방식이나 연구단계 등이 다른 경우에는 중복되는 과제로 판단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 설>

3. 유사한 주제의 연구개발과제라
하더라도 연구목표, 연구수행
방식이나 연구단계 등이 다른 경우

< 의안 소관 부서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제도혁신과	
연 락 처	(044) 202-6953